

#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제도 안내

학생, 교직원, 교육활동참여자(학부모)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·감독하에 행하여지는 **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**로 입은 피해를 **보상**하는 제도입니다.

\* 관련 법령: 『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

## 공제급여의 종류

요양급여

장해급여

간병급여

유족급여·장례비

기타(위로금)

##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 절차

학교 안전사고 발생	공제가입자 (학교장) ▼ 공제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고발생 시 <b>지체없이</b> 공제회로 통보</li> <li>▶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접속 ▶ 통보 방법(①, ②중 선택)</li> <li>① 사고 등록 → 학교안전사고 발생 신고서 출력하여 학교장 서명 → 스캔하여 파일 첨부 → 통보</li> <li>② 사고 등록 → 학교장 휴대전화번호 선택 입력 시 승인 요청메세지 전송 → 학교장은 내용 확인 후 승인(통보)</li> </ul>
요양(치료) 후 서류 준비	청구인 (피공제자·보호자 등) ▼ 공제회 또는 학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진료비 계산서·영수증    진료비 세부내역서    약제비 계산서·영수증(처방전에 따른 경우 해당)</li> <li>청구인 통장 사본(온라인 청구 시 생략)    주민등록표 등본    청구액 50만원 초과 시 → 진단서 추가</li> <li>✓ 공제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→ 3년</li> </ul>
청구	공제회 또는 학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청구 방법(①, ②중 선택)</li> <li>① <b>공제회로 제출 시</b>: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에서 학부모시스템 접속 → 모바일 인증 로그인 → 청구서 등록</li> <li>② <b>학교로 제출 시</b>: 학교에서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접속 → 학교시스템 학교 아이디로 로그인 → 청구서 등록</li> <li>✓ 팩스 또는 우편(등기) 제출도 가능</li> </ul>
심사·지급 여부 결정	공제회 ▼ 청구인 및 공제가입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결정 사항 알림</li> <li>✓ 공제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? 공제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</li> </ul>

## '요양급여(치료비)' 보상 범위

국민건강보험 적용 항목 [급여]

급여 본인일부부담금 → "보상 대상"  
\* 상급병실 및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건강보험공단부담금은 제외

국민건강보험 적용되지 않는 항목 [비급여]

비급여 본인부담금 → "일부 항목" 보상

구분	보상대상인 주요 비급여 항목				보상되지 않는 주요 비급여 항목		
자기공명영상 (MRI)	1회 인정 (의사 소견의 사유에 따라 추가 인정 가능)	보철	치아 1대당 500,000원 범위 내 (2회 인정)			재활 및 물리치료료 (도수치료, 체외충격파치료, 신장분사치료 등)	
초음파	인정	캐스트코어·포스트·레진	치아 1대당 150,000원 범위 내 (1회 인정)				
성형수술비 (수술비, 레이저치료비)	1회 인정 ▶ 흉터 종류 및 면적에 따라 지급기준액 다름 ▶ 의사의 소견에 따라 횡수 추가 인정 가능	수술비	임플란트	치아 1대당 2,000,000원 범위 내 (1회 인정) (다만, 보철비 지급된 경우 그 비용을 제외한 임플란트 비용 지급)		상급병실료(1~3인실)	
			구분	지급기준	비고		
				선상흉터	10만원/cm		폭이 1cm 미만인 선모양의 흉터 (폭이 1cm 이상인 경우 면상흉터로 본다)
		면상흉터	20만원/cm <sup>2</sup>	폭이 1cm 이상인 면적으로 이루어진 흉터			
		조직함몰	20만원/cm <sup>2</sup>	연조직 또는 뼈조직이 상실된 채로 상처가 치유되면서 흉터부위가 패인 것			
레이저치료비 (시술 부위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면적을 합산)	25cm <sup>2</sup> 미만: 153,540원/회		25cm <sup>2</sup> 이상 100cm <sup>2</sup> 미만: 255,900원/회		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약제비		
100cm <sup>2</sup> 이상: 358,260원/회							
무통제	인정	진단서	1부 인정 (본인부담진료비 50만원 초과 시 제출)		조직 재생·강화·보충 등을 위한 주사제 및 치료재료 등		



- ❓ 청구는 치료가 모두 끝난 후에만 가능한가요?    ⓐ 치료 중간에 청구 가능합니다.
- ❓ 피공제자의 실손의료보험과는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한가요?
- ⓐ 가능합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. (예: 교통사고 시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에서 받은 경우, 교직원 사고 시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, 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」,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라 보상 받은 경우, 사고관련자로 부터 배상받은 경우 등)